

ISSN 1976-5657

현대사회와 문화

Journal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2008년 26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주자와 다문화주의¹⁾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번창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현상은 한국인의 '건고한' 자민족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외국인과의 이주자에 대한 문화적 관용과 존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다문화주의는 최초의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주자 여성의 정착 및 사회통합이라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생겨난 유행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정부 주도하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피상성과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시민적 권리로서 '문화권'의 개념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다. 관주도나 물신화된 다문화주의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인권, 문화권,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I. 들어가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번창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학술회의의 주제가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NGO들도 다문화주의를 내걸고 결혼이주자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실을 반영한다. 1990년에는 49,507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이 2000년 491,324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1,249,76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여행, 학업, 취업, 가족구성을 목적으로 해외로 가는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이질적인 문화와 교류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인의 '건고한' 자민족중심주의도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갑작스런 유행에 대해 일군의

1) 이 논문은 2008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다문화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학자나 시민사회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피상성과 비현실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할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의 목표를 지칭한다”(문경희, 2006: 68). 다문화주의가 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치적 비전을 표방한다면 각국에서 채택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국가별로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특수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태동한다. 한국에서 유행되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성과 정치적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는 유럽, 미주, 호주 등의 사례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 논의는 이민의 역사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가족 이민이 허용된 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종족 공동체나 마을을 구성하고 산다. 이러한 종족집결지(Ethnic Enclave)는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소수민족의 생존공동체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면 이러한 종족공동체는 곧 이 종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누리며, 사회적인 대표성을 갖는 사회적 입지를 갖게 된다. 서구에서 다문화주의가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권리에 대한 요구와 국가가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을 관리하는 통치체제의 필요성에 의해 태동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주자들에게 ‘한국식’으로의 동화 또는 무권력, 침묵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주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마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적 입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허구적일 수 있다. 이 논쟁은 적어도 가족이민이 허용되고 소위 ‘불법’ 이주자도 시간이 지나 체류국에서의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어 정착이 가능했던 국가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은 이민 수용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단기 이주자로 간주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정책에서 다뤄진 적이 없고, 그나마 다문화주의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최초의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주자 여성의 급증 때문이었다.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한국 가족의 아이를 낳고 한국 가족으로 편입된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의 이주 정책은 여전히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 성별화된 국민 개념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완전한 ‘외국인’으로 상상되는 이주자들에게는 정주를 불허한다.

그러나 다양한 이주민의 급증으로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다문화주의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시키느냐는 시민사회가 수행해야 할 정치적 개입이다. 킴리카(Kymlicka, 2005)가 지적한 대로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열려 있는 텍스트이며, 이를 현실화시킨 국가의 정책과 목표 또한 다양했으며, 때로는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개입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고찰하여 향후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주의가 태동한 배경을 고찰하고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로, 문화권의 개념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지난 몇 년 간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의 이상이 정부에 의해 ‘차용’됨으로써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다문화주의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다문화주의 논의가 사회적 소수자와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권리 옹호에 기여하기보다는 글로벌 소비주의와 더욱 더 공고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로, 시민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관점을 제시한다. 즉, 관 주도나 엘리트 주도의 다문화주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주민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국인들의 ‘다문화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한국인과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적 실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II. 다문화주의와 ‘문화권’의 의미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국가 내부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국가자원의 규칙과 정치적 개입 양식이다. 이주민의 증가와 인권의식의 확장으로 자유주의 국가가 표방했던 평등의 이상은 백인 주류의 환상일 뿐이라는 정치적 자각이 일어났다. 국가가 인종, 성, 계급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수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하고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다문화정책의 기본 기조이다.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채택되었을 때도 동화주의 원칙을 포기한 국가는 없었다. 다문화주의 정책 자체가 동화주의의 한 변형된 형태였고,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의 임시적 협상의 결과였다. 다문화주의는 크게 시민권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귀결될 수 있다.

서구에서 오랫동안 '정상적 시민'으로 간주되던 백인 남성의 이미지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집단들의 주변화와 침묵을 강요해 왔고 또한 이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인종, 문화, 성, 성적취향 등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들은 공동의 권리로서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이를 행사할 수 없었고, 소외와 사회적 냉대를 경험했다. 즉, 여성, 흑인, 토착민, 성적 소수자 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 즉, 이들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다'(키피카, 2002: 458). 기존의 시민권 모델이 좀 더 차이들을 포용하거나 이 차이들에서 오는 차별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시민권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장동진 외 2006에서 재인용)는 경제적 위계 구조에서 오는 불평등에 대한 투쟁을 재분배의 정치로, (문화적) 신분의 위계구조에 대한 투쟁을 '인정의 정치'로 구분한다. 인정의 정치는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적 지배, 불인정, 경멸에 문제를 제기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등은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양자 모두를 요구한다.

둘째로, 국가와 이민자 집단 간의 '공정한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다문화주의 논의가 나온다. 국가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이민자와 키피카(2002)가 '메틱'(Metics)이라고 불렀던 소위 불법이민자나 임시이민자들을 차별적으로 관리한다. 전자의 경우에 다문화주의는 이들의 사회 통합이 "단번

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서 세대에 걸쳐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이민자들에게 특수한 편의(모국어 서비스들)를 제공하고, 주류의 규칙과 상징들이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키피카, 2002: 490).

예를 들면, 우리는 복장규정, 공휴일, 심지어는 신장과 몸무게 제한이 일부의 이민자 집단들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는지를 검토하고...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언론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묘사가 고정관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국내 역사나 세계문화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를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피카, 2002: 490).

국가가 이민자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임시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추방 또는 자발적 귀환을 유일한 선택지로 제공하는 국가의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다문화주의적 제스처는 배제를 합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영구적으로 권리가 박탈되고 소외될 하위계급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들을 위한 사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그들과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주요 논지이다. 이렇게 다문화주의 정책은 크게 공정한 통합, 재분배와 인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확장(이중 또는 다중언어교육 등), 적극적 우대조치, 문화적 대표성의 부여 등을 포함한다(마르코 마르티니엘리, 2002).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화는 각 집단의 역사적 적응과 경험의 결과물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위계화될 수 없다.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문화 개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문화권'의 개념이다. 즉, 특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사회적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권리인 정치적 권리, 노동권, 사회권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런 권리들의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적 인정이다. 시민권의 하나로서의 '문화권'은 주류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물질, 정서적 자원을 공

급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문화권은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소수자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며, 원치 않은 강압적 문화 통합에 대항하여 주류 문화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아직 한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들의 일상적 차원에서 이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시급하다. 한국인들이 갖는 문화적 편견 중 하나는 한국식에 빨리 동화될수록 한국생활에 '적응'을 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이주자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가장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경우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한 채 새로운 문화를 체득해 간다는 자기화장적 인식을 가질 때이다.²⁾ 이렇듯 민족 정체감이나 문화적 정체감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동화'이데올로기는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감은 '없어져야 할 것' 또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 등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자존의 기반인 이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의 좋은 점을 소개하거나 알리면서 존재감을 획득하기보다는 그것을 큰 결점으로 인지하도록 강요당하며, 이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빨리 한국식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유로 밥과 김치만 먹이거나, 무슬림들에게 삼겹살을 강요하는 등의 예가 자주 등장한다.

둘째로, 문화권의 핵심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할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이다. 동일한 문화집단에서도 나이, 성, 계급, 성적 지향성 등의 차이에 따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때로는 특정 집단의 남성 연장자의 관점이 그 집단을 대표할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여성이나 문화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대표할 어떠한 통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문제는 이들이 대중매체나 여론에 의해 보

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들의 현실이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특정한 재현방식을 우리가 가장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비가시성(invisibility)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재현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습관화된 방식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중적 재현은 한국인이 이들과 맺고 싶은 관계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져 왔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처하층 일꾼', '부정한 존재 또는 오염의 근원', '불쌍한 인종'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재현은 어떤 경우에는 한국인의 부채의식을 자극하여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경우에는 한국사회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위협적인 외부인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현은 이주자들의 복잡한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한건수, 2003).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한 재현은 외국인 며느리란 호칭으로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외국인 며느리는 한국사회의 '효'의식의 악화와 돌봄 노동의 부채를 해결해 줄 존재로 그려진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종종 쓰이는 "한국사람 다 됐네"라는 표현도 한국문화에의 동화 노력이나 근접성의 정도를 보여 줄 때만 이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결국 문화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능력, 역량, 잠재성들을 공공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시킴으로써 다른 권리들을 제한하게 만든다.

III. '한국형' 다문화주의: 가치의 부재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는 다문화주의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에서 개인이 다문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원이고, 정치적 다문화주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해 내는 것이며, 강경다문화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의 확장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가와 관계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관해서는 현재 국가, 시민사회, 이주민 그룹들 간에서 그 의미를 둘러

2) 민족정체감은 자기가 속한 민족집단의 구성원이나 지식과 관련하여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이며 민족구성원으로 느끼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민족정체감은 ① 소속감과 태도로서 민족적 배경에 대한 긍지, 좋은 감정, 만족도 등이 포함된 확인과 소속감(affirmation and belonging), ② 자기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민족정체감 성취(ethnic identity achievement), ③ 고유한 민족적 행동과 관습에 관심을 두는 민족관습(ethnic behaviors)등으로 구성된다. (Tajfel, 1981, 노충래·홍진주 2006:135-135에서 재인용)

싼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란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NGO 등을 통해서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지만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 때문에 그들에 의한 운동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를 주도해야 할 주요 행위자인 이들의 법적 지위의 한계 때문에 광범위한 '문화'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NGO나 시민사회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 또는 문화 다양성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과 승인의 의미보다는 한국의 단일문화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대항적 개념이었다. 단일민족에 기반을 둔 국민주의가 만들어 내는 인종적, 성적, 계급적 등 다양한 폭력들을 통해 이주노동자, 혼혈인, 결혼이주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국가에 의해 '차용'되면서 정책적 실체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급기야 다문화주는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으로 귀결 또는 협소화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국가적 '차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하나는 정착형 결혼이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담론으로,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와 '코스모폴리탄'적 소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신자유주의 담론의 하나로서이다. 실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이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정책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담론을 지배하고 있다.

1. '다문화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 통합'3)

다문화주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정책'에 도입된 것은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자의 증가 때문이다. 1990년대에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2000년 이후 '결혼 붐'을 이루면서, 2007년 현재 11만 명의 결혼 이주자가 존재한다. 또한 2020년에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이 이룬 가족이 한국 가족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최초의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이주자 덕분에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재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다문화지향 정책은 여전히 한국적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가족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 간 상호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의 본원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열망을 가진 외국 여성들을 영구적인 사회적 소수자로 동질화시켜 내는 경향이 강하다. 인종, 성, 계급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로서 지향해야 할 다문화주의가 맥락 없이 국가에 의해 '차용'됨으로써 결혼이주자 관리제도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이란 말이 처음으로 정부문서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한 NGO 단체의 제안에 의해서이다. 2003년 가정문화운동단체인 '하이패밀리'는 '혼혈아'라는 표현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호칭을 '다문화가족 2세'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2005년부터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정부의 관심대상으로 부상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정부에서 국제결혼가족과 다문화가족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차용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며 권력을 집행하는 통치 기술(technologies of governance)의 하나로 의미의 '변질'을 겪게 된다. 2006년 한국정부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급작스레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에 관 주도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도입한다(오경석, 2007: 31). 2006년 1월부터 한국 어머니와 미국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미식축구선수인 하인즈 위드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사회 맥락 속에 '다문화가족'은 정부와 NGO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이주자와 자녀들을 한국의 국민주의의 이익관계에 통합시켜 내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의 중개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적' 속성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정부의 연구물들이 여성들의 경험하는 구조적 피해에 주목하기보다는 '사회통합담론'으로 급선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등의 각종 연구용역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이벤트사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프로젝트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3) 이 부분은 2007년 11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국가와 이주여성' 부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2006년 4월 <여성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김이선 외, 2006).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마련된 종합대책은 '이상적으로는' 결혼이주자의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생활 부적응, 빈곤 문제 등을 타파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녔다. 각 부처 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그 수는 2007년 37개소,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된 이후인 2008년에는 80개소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을 7배 이상 늘렸다. 여성부는 이주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통해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다루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정주 외국인이 조기 사회 적응을 위해 2006년 9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였고,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문화원을 통해, 농림부에서는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체험과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이선, 2007: 26). 2007년까지 전국 시군구 15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0개 기관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편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정부 주도하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하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이나 비전과는 거리가 먼 방식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 예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다문화가족'법은 정부가 채택한 '다문화'란 말이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2006년 당시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법은 2008년 9월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만, 처음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초로 사용되어 왔다. 이 법안의 기초가 된 연구보고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함.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함.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NGO 등 시민사회에서 사용된 다문화가족이란 말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 이주자들간의 사실혼을 통해 만들어 낸 가족, 새터민(탈북자)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다면, 이 법은 '합법적' 결혼 이주자로 그 지원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이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사, 한국어, 예절과 전통교육 및 결혼과 양육과 관련한 상담을 주요 지원으로 하는 '동화' 교육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동화적 통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이 정책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존재에 대한 국민국가적 불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주민 내부의 합법, 불법, 여성 결혼이주자와 남성 결혼이주자, 친밀성에 기초한 사실혼과 법적혼 사이의 엄격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남성에게는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등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정혜실(2007)이 지적한 대로 다문화가족의 범주가 내국인과 혼인한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을 배제하고 난민으로 들어온 아프리카계 가정을 배제하고 화교가정을 배제한다(정혜실, 2007: 189).

특별히 2006년 이후, 정부문건이나 정부관계자들의 언어에서 노골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대상'으로 언어화되었다. 사회통합이 결혼이주자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되는 것은 외국 여성들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위기와 돌봄 노동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족의 위기'와 저출산은 2000년 이후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중산층에서의 가족의 존재 목적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물질, 정서적 자원을 자녀들의 성공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쏟아 붓는 가족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다. 육아, 교육의 영역에서 공적자원의 투자가 없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소자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고 있다. 가족 간의 경쟁은 초국가

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탈영토화'된 전략을 추구하게 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실제로 '동거'를 하는 가족들보다는 기러기가족, 글로벌 다가구, 단신부모 가구 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으로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촌에서의 가족의 위기는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소위 이성애적 '가족'을 구성할 물질,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유일한 전략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사적 통치로 전환시켜 내는 국제결혼을 통해서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가족계획은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황정미 2005: 105). 그러나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이미 자기 집을 갖는 일과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따른 경제적 투자와 손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중산층에게는 정부의 '소박한' 출산장려책은 지속적인 '실패'가 예견되는 것이었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한국정부의 인구 정책이 '글로벌이라는 영토적 확장성'을 갖고 있는 역사적 시기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1990년대부터 증가된 국제결혼에 대해 중앙 정부는 일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한 '정책'은 부재했다. 정부의 정책은 '위장 결혼자'를 색출해서 불법적인 체류를 막는 것 외에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살아 있는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출산, 높은 이혼율, 노령화 등의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기본법'이 만들어진 직후 좀 더 손쉬운 정책의 대상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 여성이 '발견'된 것이다.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담론이 '외국인 며느리'로 수렴되면서 남성들의 동등한 배우자라기보다는 시부모를 모시며 돌봄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었다. 이주여성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려 했던 이유는 이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재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지원방안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그 기본 틀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김희정, 2007: 67).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이 1970년대 한국의 가족계획 정책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1970-80년대의 가족계획은 '관료적인 수단을 통해 수량화된 지역별 목표를 달성하는 매우 소외된 방식으

로 진행'(황정미, 2005: 108)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64년부터 전국보건소에 2명씩 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하였고 또 전국 1,473개 읍면에 1명씩 계몽요원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집행시키는 데서의 다양한 '불법적 개입'과 여성 몸에 대한 '침해'는 문제삼지 않았다(황정미, 2005: 109). 당시 '피임'으로 애국하는 모성의 이미지'가 가족계획사업 시기의 여성 주체를 구성하는 이미지라면, "한국인 아이를 출생하는 여성" 만들기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관되게 모성의 도구화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이혼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고려해 볼 때, 결혼이주자를 통한 한국가족 만들기는 커뮤니티의 생존을 위해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문건에서 여전히 결혼이주여성 중 이혼을 하거나 사라진 여성을 '이탈자'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정책은 '다문화주의'보다는 '한국식 가족'의 유지 및 재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외국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들의 주변적 위치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한 예로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한국어 교육과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증가했지만, 이주 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한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그들의 법적 지위는 '개별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남편에 종속적이고 아이의 어머니인 자신을 증명하는 데 기반을 둔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 체류비자 연장을 위해서나 국적 취득 시, 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신원을 보증받아야 하고,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취업이 금지된다(소라미, 2007). 2005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포함시키는 특례 조항이 생겼지만,⁴⁾ 흥미로운 것은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한국 국적의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격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부자 복지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김민정, 2006). 현재 결혼이주자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을 선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 아이의 '엄마'의 자격으로서만 공적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외국 여성은 결혼이주자 여성의 주체로 설정될 수 없다. 이들의 한국 내 권리는 이들의 이주목적인 가족만들기, 즉, 가사노동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 5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된다(홍성필 2006).

출산 및 양육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의 이주가 한국의 가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결혼이주자 지원정책도 '가족'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정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존재조건 자체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학대를 묵인한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2007년까지 결혼이민자 전용 센터가 전국에 2개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 예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시민사회의 다문화적 인식론의 태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부에 의해 차용(appropriate)되면서 특정한 형태의 이주여성 주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NGO들을 중심으로 Grassroots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문화번역자'로서의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가는 '여성'을 동질적인 대상으로 동원하여 국가의 기획을 완성하는 '국민국가주의'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는 지향하는 '가치'가 배제된 채, 도구적 목적으로 문화적 타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며 반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이주자간 계급 분화에 따른 차등적 권리 부여와 물신화된 다문화주의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다문화주의는 종종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구로 취급된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적'이나 '민족'에 기반한 단일민족경제체제로부터 좀 더 유연한 글로벌 다인종인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은 '기조' 면에서 무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고급인력' 또는 '기술인력'의 개념이 너무 편협하게 정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정의에 따라 차등적인 법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 간 계급격차를 극대화하여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국가정책은 '외국인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기존의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강화하고, 고급인력이나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같은 파격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투자 외국인'과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장 3년의 복수재입국허가와 영주자격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체류 절차를 개선하여 정착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200만 불 이상 투자 외국인, 50만불 이상 투자하고 3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 공로외국인,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5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에게 영주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법무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한국에서 150년 이상 '외국인'의 신분으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화교가 2003년에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2006년 약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상습, 악덕, 불법고용주, 송출 브로커, 인권침해사범 등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자와 알선브로커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가운데 자진 출국하는 자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한다.

문제는 소위 '불법체류자' 중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숙련공'이 된 이주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며, 이미 이들은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신의 정주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범죄 행위 등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없고 성실하게 살아 온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사면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반해 한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이라는 범주로 묶어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직장으로부터의 강제 이탈, 추방, 감금 등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기조 중 중요한 것은 국가와 이민자집단 간의 '공정한 통합'이라고 볼 때, 불법이라는 영구적인 범주로 묶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당하는 예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통합정책이 없는 다문화정책은 허구임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정주자이며 성실한 노동자인 이주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불안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상층 회로로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과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체류권을 절실히 요구하는 숙련의 미등록 이주자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이주정책은 이주자 간의 계층분화와 차별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문제적이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주의 논의는 '물신화된 대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국적인 요리, 음악, 다채로운 축제, 의례 등 다문화주의의 피상적인 찬양은 상실, 빈곤, 편견, 차별 등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다"(김영옥, 2007: 139)는 지적에서처럼,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상층부 회로'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추구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이 결합되어 있다. 실제로 구조적 차별을 '문화적 다원주의'로 포장하는 것이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유포하는 담론이다.

'글로벌'의 의미는 국가 경계 밖에 있는, 돈을 들여 포획해야 할 물신화된 대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관광, 영어 연수, 유학 등을 통해 해외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미국식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화되면서 흔히 남들과 구별되는 경제, 문화적으로 다른 위치를 획득해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김현미, 2005). 다양한 방식의 해외체험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경험이 곧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암묵적으로 이주자 간 한국인 간의 '계층' 격차를 승인하기 때문에 인종이나 성차별에서 오는 빈곤의 지속은 정책적 고려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신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정부의 4무정책(노동, 복지, 여성, 환경 분야에 정책 부재)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구제하기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이름하에 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도구화가 강화되거나 다문화주의를 매우 물신화된 방식으로 유포할 위험성이 높다.

IV.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관점

현재 한국의 이주정책은 비자 지위에 따라 이주자들을 사회적 통합, 선택적 이용, 범죄화의 대상으로 구별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 의한 이주자 운동은 결혼이주자들을 포함해 모든 이주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수용 국가와 관계맺을 수 있는'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개념으로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슬과 데이비슨(Castles and Davidson, 2000)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문화가 유럽에 비해 특이한 점으로서 국가대신 가족이 사회복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사회도 전형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모델을 따라왔다. 단일민족국가는 국가를 혈연적 가족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장려했고, 이러한 관점은 시민권을 특정한 영토에 대한 귀속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과 영토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타 영토에 귀속되었다가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게 존재하거나, 단일 영토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동질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동종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인들 역시 자신의 이해를 위해 다른 나라로 대규모 이민을 떠났고, '탈영토화된 전략'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다른 나라로 이주나 이민 후 임시 체류자로부터 시작해서 '주류'에 편입된 한국인들은 성공사례로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면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격상되고 있다. 똑같은 논리로 한국에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관 주도의 다문화정책은 '법적 지위'가 확실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이주자들만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해왔다. 즉, 필요한 노동력은 얻되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는 데 비용을 들이지 않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법적 지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초국적 전략을 실천하면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라는 개념을 사용한 미셸 스미스(Michael Smith, 1998)는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비엘리트들의 초국가적인 이동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위로부터의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from above)는 세계 금융경제에 의해 추동된 동질적인 표준화를 구조적으로 강제하지만, 이와 반대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초국적주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

화시켜 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는 이주민들이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시청 등을 통해 여전히 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착국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 만이 한국인들이 이들과 함께 공존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아래로부터의 초국적주의에 기반하여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정치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국 내 이주민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근접성이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연결망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주류문화의 하나로 인정하고 통합해 내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편협한 동화주의나 성찰성 없는 글로벌 물신주의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자원을 확장시켜 넘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아래로부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미셸 스미스(Smith, 1998)가 지적했듯이 이들에 의한 실천이나 권력의 장이 자신이나 혹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적이거나 해방적인 방식으로, 혹은 부를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비가시화되고, 제대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주자들의 생활양식이나 자조 공동체들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상호 열린 교류들이 한국 사회를 풍요롭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본, 노동, 문화 등의 급속한 전지구적 이동성을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인간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이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질적인 문

화행위자들 간의 교섭이 증대되는 '문화교차' 지역이 급증한다. 다문화주의를 정책적 기조로 채택할 경우 이러한 문화교차지역에서 전인격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부재한 '능력'은 무엇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성찰성을 근간으로 한 다문화주의 가치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행사할 수 있는 '폭력성'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은 보장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종족적 고립을 막고, 주류 사회의 의미있는 참여자로 변화시켜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주의 가치에 의거하지 않는 허구적 다문화주의를 유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이상이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은 현실이다. 문화 간의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한국의 국민이 누구이며 시민의 권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한국의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자 정착지원사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일상, 노동, 정치, 교육, 문화, 미디어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인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문화권'의 개념을 설정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의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법적 근거는 최근 법무부에서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의 제1조(목적)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명시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며 문화적 차별을 없애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18조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로는 한국 정부가 가입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년 11월)이다. 이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은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창조의 자원이다. 개인은 특성의 사상, 이념, 제도에 의한 문화의 획일화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하여 개인은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삶의 양식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특성의 가치, 믿음, 관행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매체의 다양성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대안적 가치들을 모색하며 타자의 문화적 차이들을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약의 핵심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가 소득, 지역, 계층, 성별, 신체조건, 집단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법이나 국제적 협약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비전을 갖고 다문화정책의 청사진을 짜야 한다. 성급하고 선언적인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그 공허함 때문에 한국 내 이주자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결혼이주자와 이주 노동자의 관리 정책이나 축제성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글로벌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둔 이주자의 사회 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06.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2006년 11월2일,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엄>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자료집 pp.65-P85
- 김영옥. 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pp. 129~160
- 김이선. 2007.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정책." 『젠더리뷰』 봄호: 22~31.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 2005a.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 사회』 70호: 10~37.
- _____. 2005b.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출판사.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마르티니엘로, 마르코.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소라미. 2007.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 제도적 문제점" 2007년 11월1일~2일 이화여대 한국 여성 연구원 주최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학술대회 발표문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정혜실. 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킵리카·윌. 2002(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역, 동명사.
- 홍성필. 2006.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96호, 27~42.
- 황정미. 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New York: Routledge
- Kymlicka, Will. 200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Smith, Michael and Luis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Edison, NJ: Transaction Publishers.